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256
- 제 안 자 : 김기덕 의원 외 11명
- 제 안 일 : 2020년 2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같이 가진 중복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0. 2. 17. ~ 2.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제4조 제4항)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관계 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현황 (기준일 : '19. 12. 31.)

구분	시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비고
인원	1,282명(중증 87명)	41,842명(시청각장애인과 중복)	

○ 구별 시각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 '19. 12. 31.)

구별	인원	구별	인원	구별	인원	구별	인원	구별	인원
종로구	717	동대문구	1,551	노원구	2,780	강서구	2,834	관악구	2,296
중 구	735	종랑구	2,043	은평구	2,345	구로구	1,920	서초구	1,214
용산구	991	성북구	1,921	서대문구	1,336	금천구	1,167	강남구	1,582
성동구	1,193	강북구	1,992	마포구	1,463	영등포구	1,574	송파구	2,088
광진구	1,337	도봉구	1,651	양천구	1,715	동작구	1,569	강동구	1,818

나. 세부 내용 검토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편의성 제고(안 제4조 제4항)

- 안 제4조제4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개정을 통해 시각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제공외에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등 정보 취약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div style="text-align: center;">〈신 설〉</div>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u>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



- 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방송시설·점자도서·음성도서 등 이용접근성을 개선·지원하며, 도구의 개발·보급 노력을 규정한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점자정보단말기 보급현황(개인) (기준일 : '19. 12. 31.)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보급대수	44대	12대	18대	14대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데이터담당관)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공공기관 점자정보단말기 비치현황

(기준일 : '20. 2. 10.)

구분	서울도서관 (중구)	서울점자도서관 (노원구)	강서점자도서관 (강서구)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초구)
비치대수	2대	2대	2대	5대

※ 장애인도서관 10개소 중 2개소만 점자정보단말기 비치, 개인이 보조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점자정보단말기 이용현황

(기준일 : '20. 2. 10.)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서울도서관	없음	없음	11건(2명)	4건(3명)	4건(2명)	
서울점자도서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강서점자도서관	없음	104건(2명)	104건(2명)	104건(2명)	104건(2명)	

※ 청구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청구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음.

※ 웹접근성 품질인증(Web Accessibility)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 부여

- 또한, 청구에 의한 정보 공개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인 점자, 음성, 수화 등의 확대 제공할 필요성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변환 불가능,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정보공개법」의 “정보”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이 해당되며, 문서 외에는 점자 변환이 불가능하고, 문서에 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자로 변환된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외부 업체에 점자 변환을 의뢰할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2019년 총 18,881건)

- 정보공개포털(16,889건, 89.4%), 직접방문(1,877건), 우편·팩스 등(115건)

- 한편, 관련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 접근이 아닌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정보 접근’과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특정 대상(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실적을 개별 조례에 따라 개별부서에서 보고·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정보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관련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재 정보공개 추진실적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발간하여 공개하고 있는 바, 이를 시각 및 청각 중복장애인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여부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연도별 현황 2010-2018

(단위 : 건)

구분	개회횟수			심의의견				안건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부존재등 기타
2018	21	21	-	76	69	3	4	20(26.3%)	30(39.5%)	26(34.2%)	-	-
2017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	2(3.3%)
2016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2(3.6%)	3(5.5%)
2015	16	16	-	70	39	30	1	10(14.3%)	29(41.4%)	25(35.7%)	3(4.3%)	3(4.3%)
2014	19	19	-	84	33	50	1	9(10.7%)	25(29.8%)	43(51.2%)	1(1.2%)	6(7.1%)
2013	17	17	-	67	19	45	3	7(10.4%)	19(28.4%)	40(59.7%)	-	2(5%)
2012	16	12	4	40	19	21	-	11(27.5%)	18(45%)	9(22.5%)	-	2(5%)
2011	13	-	13	17	17	-	-	1(5.9%)	5(29.4%)	10(53.8%)	1(5.9%)	-
2010	8	-	8	13	13	-	-	3(23.1%)	3(23.1%)	7(53.8%)	-	-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참고 ① 2019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2019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 시행령 14조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를 이용·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금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5.3.31.)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17.12.29.)
 - 웹표준문법(HTML, CSS) 준수, 웹호환성(동작, 레이아웃, 플러그인) 확보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8.3.22.)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웹사이트 이용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호환성 확보 필요

□ 추진경과

-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실시 : '08년 ~ 계속(연 2회)
 - 교육대상 : 市 및 사업소,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자
- 市 홈페이지 구축시 웹접근성·호환성 점검 : '11년 ~ 계속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시 웹접근성 준수 반영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심의시 웹접근성·호환성 점검 후 도메인 부여

□ 추진방향

- 웹접근성·호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적용
- 웹접근성·호환성 관련 사전심의·실태조사 계속 실시

□ 추진계획

① 웹사이트 사전 심의 및 관리 강화

- 웹사이트 구축시 웹접근성·호환성 검토 :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 웹접근성 준수, 웹표준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항목 검토
- 오픈 심의(오픈 15일전) : 자체평가 → 웹접근성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개선
 - 대상 : 서울시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1억 이상)의 신규 또는 개편 사업
 - 심의내용 : 웹접근성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등
 - 심의방법 : (현행)호환성, 접근성자체점검 → (개선)호환성 자체점검, 접근성 전문가점검
- 추진절차



- 홈페이지 운영실태 평가시('19.11월) 웹접근성·호환성 배점점수 상향
 - 기존 40점 → 50점으로 상향하여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확행 유도

② 웹접근성·호환성 교육 실시

- 상·하반기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실시 : '19. 4월, 9월(2회)

③ 웹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 추진기간 : '19. 5월 ~ 11월
- 소요예산 : 103,790천원
- 추진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의뢰
- 사업내용

1) 시 및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실태조사

- 대 상 : 195개 (홈페이지 164개, 모바일앱 31개)
 - ※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품질인증 마크 획득 예정인 홈페이지 제외
- 평가기준 : 지침에 따른 항목별 평가
 - ▶ 홈페이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모바일앱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후속조치 : 사업부서에 개별 종합 보고서 제공(카드뉴스 웹접근성 준수 등) 및 개선계획 수립 적용(필요시 예산 반영)

2) 품질인증 기준 적합 웹사이트 인증마크 발급

- 접근성 준수율 우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획득하여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 인증기준 : 전문가 진단 95% 이상, 사용자 진단 과업 100% 수행

3) 市 대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 '19. 10.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정보접근 수준 평가 대비 점검 : '19. 10.

④ 웹호환성 실태조사

- 추진기간 : '19. 10월
- 추진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 자체조사(비예산)
- 조사대상 : 市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대표 홈페이지(시 121개, 산하기관 23개)

- 조사내용 : 웹호환성 진단 기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툴 활용 및 수동평가
 - W3C Validator 활용 웹표준 문법 검사, 브라우저별 웹호환성 검사

구 분	검사항목	진단방법
웹표준 문법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	W3C Markup Validator
	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W3C CSS Validator
웹호환성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브라우저 부가 기능,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비표준기술 제거	비표준 기술제거 여부	수동평가
	최신 웹표준기술 사용 여부	수동평가